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56
----------	------

2025년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의결(완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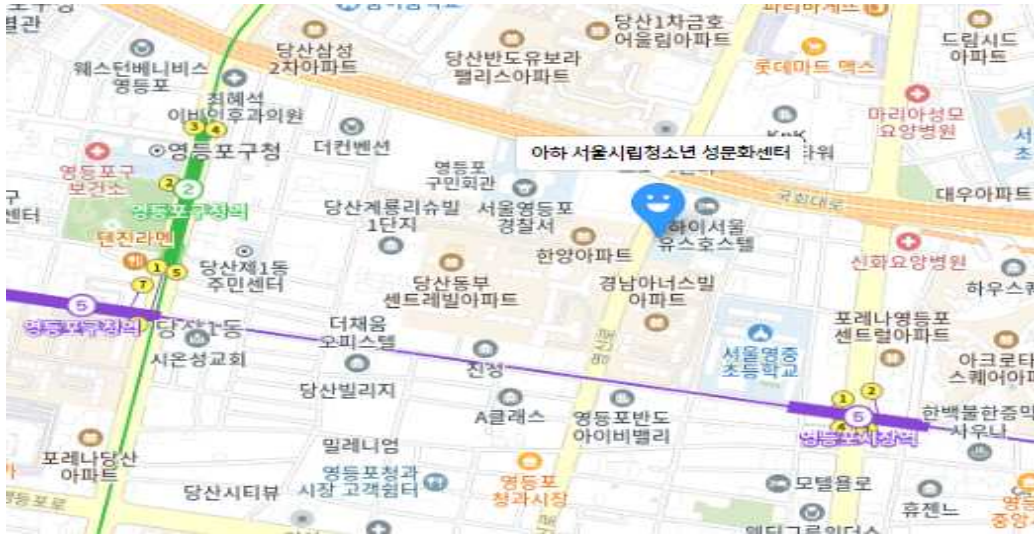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6개분소 : 은평·광진·동작·드림분소('25.7.1.), 창동분소('26.7.1), 성북분소('27.7.1)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부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7개소를 행정기능 통합 및 상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통폐합하여, 대표센터를 중심으로 분소를 운영하는 체제로 재구조화 후 이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2025.7.1.~2028.6.30.) 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 종합·총괄 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0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성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 바른 성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로, 7개 센터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던 성 관련 교육을 일원화하여 서비스 균일화 및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재구조화 또는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성문화센터별 ‘사춘기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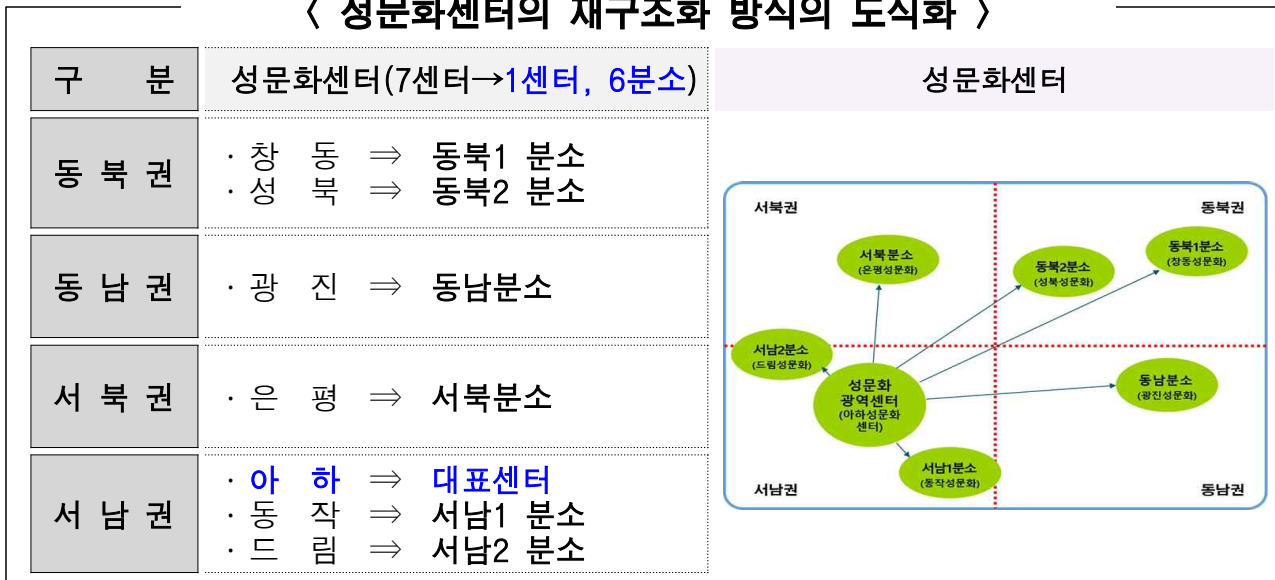
시 설 명	대 상	주요 내용	활 동	시간
아 하	초4~6학년	성기 명칭, 몸의 변화, 월경, 탄생	단어퀴즈 / 영상보기	80분
광 진	초4~6학년	사춘기 개념	OX퀴즈	60분
창 동	초4~6학년	사춘기 개념(위생, 속옷, 자위, 생리 등)	마인드맵 / 고민 적기	40분
드 림	초5~6학년	월경 알기, 월경용품 알기	월경용품 사용법	40분

- 평생교육국은 시설별 잔존 민간위탁기간을 고려하여 연차별 통폐합 계획을 수립(‘2025년 1센터 4분소’→‘2026년 1센터 5분소’→‘2027년 1센터 6분소’)하고, 인력·예산·조직을 일원화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하며, 센터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을 대표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균일한 교육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 후 조직구조 〉



〈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 방식의 도식화 〉



- 성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성 관련 바른 지식·정보 제공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방 및 안전 등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집단교육을 위주로, 중·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개별·맞춤형 성 상담 위주로 접근해야 할 것이나,
 - 성문화센터의 업무 비중은 대부분 학교를 방문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성교육이며, 센터를 내방하여 받는 개별 또는 소그룹 성교육·성상담은 적은 비중으로 나타나는바,
 - 성문화센터의 역할이 초기 및 중·후기 청소년들에게 균형있는 성교육과 성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재편되는지 여부, 실제 성문제를 겪고 있는 중·후기 청소년에게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24년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시설 〉

(단위: 건, 명)

구분	계		교육인원		상담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체험관 교육·상담	4,871	27,827	2,515	25,471	2,356	2,356
찾아가는 교육·상담	7,806	159,172	7,702	159,068	104	104

- 또한, 성문화센터가 재구조화를 통해 성교육의 주체를 명확화하고, 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학교에서는 성교육 강사의 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부모들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성교육에 대해 불안감, 미흡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어, ‘청소년 성교육’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성교육의 주체는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성교육의 주체는 전문 성교육 강사를 섭외하는 선생님이 성교육의 주체가 되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부모가 ‘청소년 성교육’의 주체(소비자, 사교육 구매자)가 되고 있는바,
 - 성문화센터가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불안감, 미흡함 등”을 해소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 가능한지와 실현 방법(정책과 사업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전 청소년 성교육·성문화 등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성문화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여부 및 민간의 성교육 방식에 앞서 바른 성교육 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 성교육’ 분야가 상업적으로 ‘시장화’된 여건 속에서 성문화센터의 ‘성문화 선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까지 학교 및 서울시는 ‘보호와 통제’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성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민간의 일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청소년을 학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 성적 영역에서도 자유로운 개인 등으로 간주하며, 인식의 재생산을 거쳐 십대 청소년도 ‘사회적으로 성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있음.
 - 청소년의 성 보호에 중점이 있는 ‘보호주의 성교육’과 청소년의 (성적)표현에 방점이 있는 ‘자유주의 성교육’ 등이 경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각각 발전하고 있는 성교육 시장에서 평생교육국은 성문화센터의 운영 방향을 확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시장의 ‘고객 요구 맞춤형 성교육’에 앞서서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대안은 도출했는지 여부, 청소년 성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보호주의 vs 자유주의, 성교육의 주체 왜곡, 성교육 상업화에 따른 문제 등)를 해소할 수 있는 재구조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성교육 시장의 다양한 방향성

- ‘남자 청소년을 억울한 피해자’로 확정하고, 대응법을 가르치는 성교육
- ‘맞춤형 성교육’으로 가장하여 성교육의 구매자(학부모)의 기호에 맞게 ‘특정 성별 우월주의 성교육’
- 구매자의 자녀 성별에 따라 피임에 방점을 맞춘 성교육

- 청소년의 성교육·성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문화 센터의 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더해 신속행정, 공공서비스의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재구조화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 재구조화의 목적이 사회문제 해소가 아닌 단순히 ‘민간위탁 시설의 수’만을 감축하려는 경우, 외관상 민간위탁 개수는 감소하나, 인력의 감원 및 운영비용의 절감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이 현재와 대동소이할 경우에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를 담은 본 동의안은 추진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 평생교육국이 사회문제 인식 및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해소 방안으로써 시설의 재구조화와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56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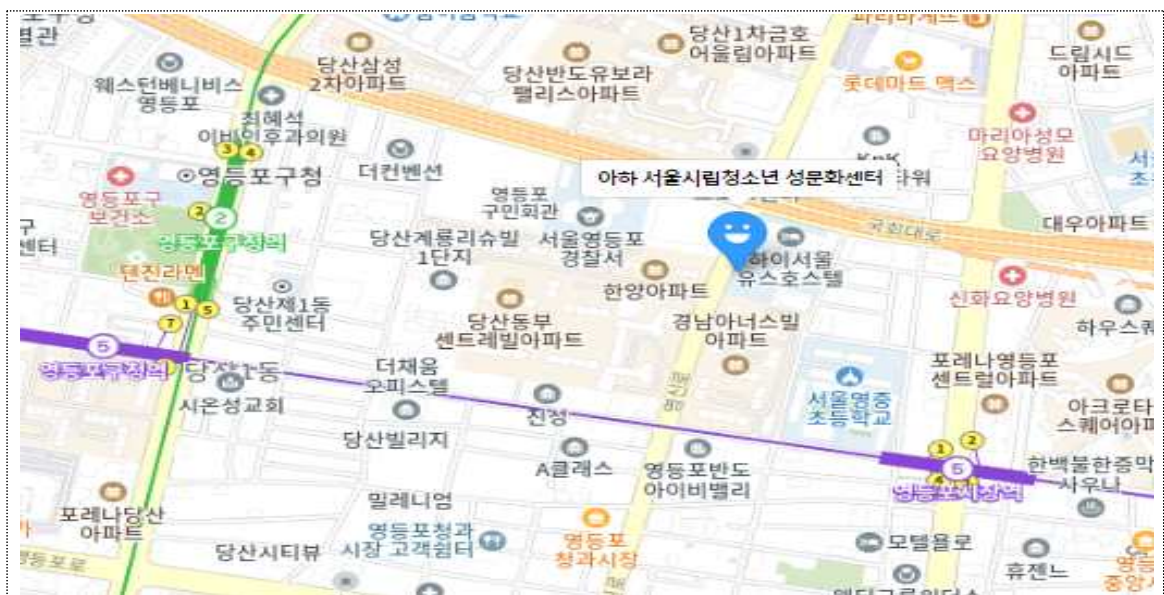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6개분소 : 은평·광진·동작·드림분소(25.7.1.), 창동분소(26.7.1), 성북분소(27.7.1)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정화 (☎ 2133-4117)